

동탄 A106 어울림파밀리에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106블록
-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 지상20층 9개동 총 6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주 택 형 : 84m<sup>2</sup>A, 84m<sup>2</sup>B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4440A	84.6492B	합계
일반공급 세대수		108	38	146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장애인	경기도	2(10)	1(5)
		서울특별시	1(5)	0(0)
		인천광역시	1(5)	0(0)
		소계	4(20)	1(5)
	일반 (기관 추천)	중소기업 근로자	3(15)	1(5)
		국가유공자	1(5)	1(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1(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5)	0(0)
소계		10(50)	4(20)	14(60)

- 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역배분에 맞추어 해당지역별 추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신청자 미달 시 타지역 신청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2.11.25.(금)		※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홈페이지( <a href="http://www.동탄-a106-a107.com">http://www.동탄-a106-a107.com</a> )
견본주택 개관	2022.12.02.(금)		※ 홈페이지( <a href="http://www.동탄-a106-a107.com">http://www.동탄-a106-a107.com</a> )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2.12.05.(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당첨자 및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2.12.14.(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2.12.26.(월) ~ 2022.12.30.(금) 10:00~16:30		※ 장소 :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 ※ 당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 접수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불가</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 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ul>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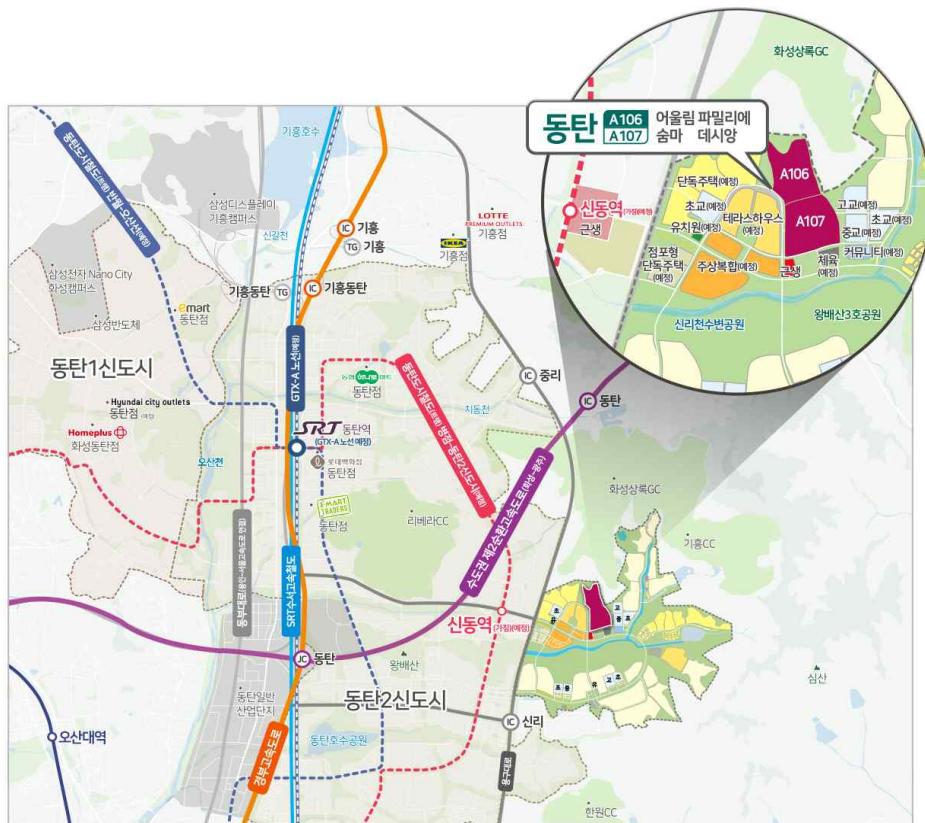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제외 및 계약불가]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됩니다.
- ※ 해당 기관 추천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11.25.(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동탄 A106 어울림파밀리에'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5.(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분양가 : 미정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22.11.25(금) 예정) 시 최종확정

### 3)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홈페이지 : <http://www.돌탄-a106-a107.com>

문의 : 031-376-8840

첨부1] 동탄 A106 어울림파밀리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기간 내 미 투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기번호는 출처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